

규 정

의회사무국-227호 (2022. 1. 12.)와 관련하여, 「순천시의회의석배정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의장



허유근

2022년 1월 13일

순천시의회 규정 제19호

붙임 순천시의회의석배정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순천시의회 의석배정예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순천시의회 의석배정예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2조”를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맨뒷열 좌측 의석부터 부의장, 상임위원장 순으로 배정하되 상임위원장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 위원회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며, 의장은 부의장 앞 의석으로 배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본회의장 의석배정) ① (생 략) ② 본회의장 의석은 순천시의회의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 등록된 의원 (이하 “다선의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다선의원은 주민등록법상 생년 월일 순에 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순천시의회의회의 규칙 제8조 및 순천시의회의위원회조례(이하 “의회위원회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맨뒷열 좌측 의석부터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장 순으로 배정하되 상임위원장은 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 위원회 순으로 의석을 배정한다. ③ (생 략)	제2조(본회의장 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5조————— —————. 다만,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맨뒷열 좌측 의석부터 부의장, 상임위원장 순으로 배정하되 상임위원장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 위원회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며, 의장은 부의장 앞 의석으로 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상임위원회 회의장 의석배정) 상임 위원회 회의장 의석은 상임위원장 의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을 간사에게 배정하며, 위원은 제2조 제2항을 준용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상임위원회 회의장 의석배정) —— ————— 부위원장—— ——. —— —— 부위원장이 ———.